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87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5. 10. 15.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6. 13.자 취득세 64,827,110원, 지방교육세 6,029,040원, 농어촌특별세 3,241,19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9. 4.자 취득세 51,066,840원, 지방교육세 4,748,930원, 농어촌특별세 2,553,1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6. 엘이디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개업연월일을 2011. 4. 7.로, 사업의 종류를 업태는 제조업·부동산·서비스업으로, 종목은 정밀기계부품 및 금형자동화부품·임대·설비보수 및 수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6. 10. 주식회사 [redacted]로부터 [redacted]군 [redacted]읍 [redacted]리 [redacted] 공장용지 18,833㎡, 같은 리 738-7 공장용지 883㎡, 같은 리 1500 대 873㎡(이하 위 각 면적 합계 20,589㎡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의 연면적 합계 13,056.33㎡의 공장건물(총 12동의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4,565,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다. 한편, 삼양과자연 주식회사는 2011. 1.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11. 7.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중 연면적 합계 13,012.41㎡에 대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 변경승인을 받은 이후, 리모델링을 하고 지식산업센터 모집공고를 통하여 입주업체를 모집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8. 감사원으로부터 원고의 임대소득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의 자료와 함께 이 사건 각 건물의 임대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된 지방세를 과세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 이에 피고는 관련조사를 거쳐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 중 연면적 합계 5,807.22㎡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건물'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redacted]텍 영농조합법인 등 12개 업체에 대하여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순번	임대업체	임대기간	임대면적(㎡)
1	[redacted] 영농조합법인	2011. 7. 1. ~ 2014. 6. 30.	101.82
2	㈜ [redacted]	2011. 8. 1. ~ 2014. 7. 31.	151.33
3	㈜ [redacted]	2011. 10. 1. ~ 2014. 9. 30.	473.40
4	㈜ [redacted]	2011. 10. 25. ~ 2013. 10. 24.	1,491.50
5	㈜ [redacted]	2011. 11. 14. ~ 2014. 11. 13.	414.20
6	㈜ [redacted]	2011. 12. 1. ~ 2013. 12. 31.	669.14
7	㈜ [redacted]	2012. 1. 1. ~ 2013. 12. 31.	173.47
8	㈜ [redacted]	2012. 3. 1. ~ 2014. 2. 28.	957.00
9	A	2012. 4. 10. ~ 2015. 4. 9.	252.00
10	㈜ [redacted]	2012. 4. 20. ~ 2015. 4. 19.	63.00
11	㈜ [redacted]	2012. 4. 20. ~ 2015. 4. 19.	63.00
12	㈜ [redacted]	2012. 6. 1. ~ 2015. 5. 31.	997.36
합 계			5,807.22

마. 이에 피고는 과세예고 절차 등을 거쳐 2014. 6. 13. 및 2014. 9. 4. 원고에게,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계쟁건물 및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계쟁건물의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면적 × 이 사건 계쟁건물의 연면적 / 이 사건 각 건물 전체의 연면적)에 대하여 원고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격 4,565,000,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와 각 건물의 각각의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각 건물의 각각의 취득가격을 산정한 후, 위 각각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전체 연면적(13,058.33㎡) 중 이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건 계쟁건물의 연면적(5,807.22㎡)의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계쟁건물의 취득가격을 1,133,813,244원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의 취득가격을 893,823,101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아래와 같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2014. 6. 13.자 이 사건 계쟁건물에 대한 취득세 64,827,110원, 지방교육세 6,029,040원, 농어촌특별세 3,241,190원의 부과처분
○ 2014. 9. 4.자 이 사건 계쟁토지에에 대한 취득세 51,066,840원, 지방교육세 4,748,930원, 농어촌특별세 2,553,130원의 부과처분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5. 4.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17, 2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처분사유가 부존재함

가) 이 사건 계쟁건물과 관련하여

(1)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함

원고의 사업자등록증(갑 제7호증의 1)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 중 '업태'에 '부동산·서비스', '종목'에 '임대'로 명시되어 있는 점, 법인등기부(갑 제7호증의 2, 3)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도 '사업목적'에 '자동화시스템 및 엔지니어링 용역제공업, 중고설비 보수 및 판매업, 음·숙박업 및 서비스업, 부동산 관리대행 및 임대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쟁건물을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로 운영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한 것은 단순한 부동산 임대업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입주업체들에게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기술을 복합적으로 지원한 일종의 용역제공업·서비스업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쟁건물을 지식산업센터 운영의 일환으로 다른 업체에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을 제조업 공장과 그 부속 건물로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각 건물 전체를 원고의 본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상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원고는 [redacted]군과 [redacted]도로부터 적극적인 투자권유를 받은 이후 2011. 6.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고 2010. 6. 23. 피고 및 [redacted]도지사와 '원고가 [redacted]군에 89억 원을 투자하고, [redacted]군 및 피고는 원고에게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받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투자협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을 운영하면서 2011년 96억, 2012년 12억, 2013년 10억, 2014년 12억 상당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피고와 [redacted]도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외자유치에 대한 지원금과 도내 이전기업지원금, 시설투자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재원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단 한푼의 지원금도 받지 못해 매우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는바, 원고로서는 아무런 지원금도 받지 못한 상태로 순전히 원고 자신의 투자금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경영하다보니 여분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 계쟁건물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다른 업체에 임대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는 방식으로 운영·관리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당초의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금 약속을 지키지 않자 불가피하게 자구책으로 이 사건 계쟁건물을 다른 업체에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것인바,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계쟁토지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쟁건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원고의 본래 사업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됨

피고는 당초 원고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권장하면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승인하였고,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보조금까지 지원하였다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운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용 재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부과세액 계산이 잘못되었음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격 4,565,000,000원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전체 연면적(13,058.33㎡) 중 이 사건 계쟁건물의 연면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5,807.22㎡)의 비율로 안분한 2,027,636,345원(=이 사건 계쟁건물 1,133,813,244원 + 이 사건 계쟁토지 893,823,10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계쟁건물은 이 사건 각 건물 중 나머지 건물 부분과 구별되는 건물로 각 건물가격에 차이가 있고,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각 동의 건물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감정평가되어 평가되었으므로, 단순히 건물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그 세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계쟁건물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부과세액과 관련하여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연면적에 대한 가격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전체 연면적 중 이 사건 계쟁건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가격을 기준으로 그 세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계쟁건물이 위치한 대지면적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에 반하는 처분임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반하는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지

1) 이 사건 계쟁건물과 관련하여

가)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의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4. 2. 6. 선고 2006두18614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따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그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창업중소기업의 업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는 사업 및 부동산 임대업은 위 규정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설령,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설립된 이후인 2011. 7. 14. 피고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 변경승인을 받고 그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창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쟁건물을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한 것이 원고의 본래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면제받은 취득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사유의 하나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위 '처분'에 '임대'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쟁건물을 다른 업체들에게 임대한 것은 원고의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계쟁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임대'가, 법인등기부상 '사업 목적'란에 '임대업' 등이 각 명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쟁건물을 다른 업체들에게 임대한 것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재산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조세특례법 제120조 제3항 단서상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 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자체로 원고의 자금 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에 해당할 뿐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나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건물을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외부적인 사유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쟁토지와 관련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쟁건물을 원고의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계쟁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쟁토지 역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는지

살피건대, 피고가 2011. 1. 5. [redacted] 주식회사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승인하고, 2011. 7. 15. 원고에게 지식산업센터 설립 변경승인을 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지식산업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다른 업체들에게 이 사건 계쟁건물을 임대하는 것을 두고 원고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추징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부과세액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1) 먼저, 이 사건 계쟁건물이 감정평가되었으므로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있는 경우에만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갑 제1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계쟁건물이 위치한 대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그 부과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쟁건물에 부속된 토지의 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이 사건 계쟁건물이 위치한 대지의 면적이 아닌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면적에 대한 가격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전체 연면적 중 이 사건 계쟁건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가격을 기준으로 그 세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반하는 처분인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법 제28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은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신설되었으며, 위 법률 부칙(제11138호, 2011. 12. 31.) 제1조는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다른 업체에게 임대하는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이나 '증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이 신설되었는바, 위 법률 제11138호의 부칙 제1조에 의하면 그 시행일이 2012. 1. 1.부터이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그 적용은 위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인데,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는 위 개정조항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시행 전인 2011. 6. 10. 성립한 것으로서 위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그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강회

판사 장우석

판사 류지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별지

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2011.12.31]

부칙 <제11138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21>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2>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2, 2013.3.23>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받으면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①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③ 제2항에 따라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매각할 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없다. 다만, 파산으로 인한 매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2,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2>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지식산업센터

③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1, 2010.4.12, 2013.3.23>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12>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4.12>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① 지식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0.4.12>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07

업센터를 설립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3.3.23>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토지 등의 일괄취득)

①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끝.